

민원 사무명	친양자 입양취소 신고				
민원내용	친양자입양을 취소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고하는 민원				
근거법규	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제70조				
처리부서	민원지적과	협조부서 (기 관)	없 음	처 리 기 간	없 음
현 장 조사사항	없 음				
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	접수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(위임전결 : 담당)				
구 비 서 류	<민원인 제출서류> 1.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1부 2.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. 신분증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1. 친양자입양취소 당사자의 기본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(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)				
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	관련부서명	협 의 사 항			
	없 음				
후 속 이행사항	후속민원명	절 차	시 기	처리부서	조치사항
	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 (11호)	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	처리후 즉 시	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	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 정리
수수료 및 제반경비	없 음				
관련후속 이행사항	없 음				